

2022. 6. 23(목) 16:10~

제7차 규정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안건〉

1. 「LINC 3.0 사업단 규정」 제정

○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직제규정, 업무분장규정, 성과급연봉제, 청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규칙, 교무위원회규정, 창업교육운영위원회규정, 국책사업관리위원회규정, 스마트융합기술연구소규정

2. 「7-1-20 생활관규정」 개정(전주생활관)

3. 「3-1-38 한국어교육지원센터 강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한국어교육지원센터)

「LINC 3.0 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안) 신조문표

제 정 (안)
LINC 3.0 사업단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기본계획(교육부공고 제 2022-12호(2022.1.13.))」 및 학교법인 우석학원 정관 제91조에 따라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되는 LINC 3.0 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본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체제 구축 및 지원 2.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취·창업교육 및 교원·학생 창업에 대한 지원 4.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발굴·지원 5. 기업연계 기반 공유·협업 산학연협력 활동 6. 기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①LINC 3.0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LINC 3.0 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사업단에는 LINC 3.0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성과관리부, 기업지원부, 교육지원부, 공유·협업지원부, 사무국, 진천사무국, 산업별 산업협업특화센터 등의 조직을 둔다. 2. 사업단에는 단장, 부단장, 기획성과관리부장, 기업지원부장, 교육지원부장, 공유·협업지원부장, 산학협력 정보담당관, 산업체전문교수, 사무국장 및 진천사무국장, 산업별 산업협업특화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LINC 3.0 사업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에 관한 주요 전략을 마련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LINC 3.0 위원회를 둔다. ③LINC 3.0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 산학협력전담교수가 참여하는 참여학과협의회를 둔다. ④LINC 3.0 사업 이행결과 산학연협력 사업 수행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⑤LINC 3.0 사업추진성과 모니터링, 사업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기업 및 지역사회와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협업특화위원회를 둔다. 제5조(단장 및 부단장) ①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②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업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원 중 부교수 이상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④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산학협력정보담당관) ①사업단에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은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산학협력정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정보 총괄 및 통합 관리 2. 산학협력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및 생산물 등 관리·운영 3.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 4. 기타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항의 관리 제7조(산업체전문교수) ①산업체 전문교수를 캡스톤(어드벤처) 디자인 개설학과 학과장 또는 취·창업 동아리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산업체 전문교수는 산업체에 2년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산업체전문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 1. 캡스톤(어드벤처) 디자인 과목 지도(기업연계기반형 또는 글로벌형 과제팀에 한함) 2. 취·창업동아리, 현장실습 지도 제8조(기획성과관리부) ①기획성과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학연협력 사업화 기획 및 교육 성과분석 2.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성과관리 3. 기타 각 업무 간 유기적인 연계 및 조정 ②기획성과관리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기획성과관리부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기업지원부) ①기업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특화분야 ICC 기술사업화 지원 및 성과분석 2. 산학공동연구,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재직자교육, 예로기술 지원 3. 기타 각 업무 간 유기적인 연계 및 조정 ②기업지원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기업지원부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교육지원부) ①교육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업체 수요맞춤형 교육과정(전문식교육, 계약학과) 운영 및 지원 2.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학기제, 취·창업교육 운영 및 지원 3. 기타 각 업무 간 유기적인 연계 및 조정 ② 교육지원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교육지원부장은 부교수 이상 교수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공유·협업지원부) ①공유·협업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용장비, 유료 가족회사 운영 및 관리 2. 산학연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3.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4. 기타 각 업무 간 유기적인 연계 및 조정 ② 공유·협업지원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공유·협업지원부장은 부교수 이상 교수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사무국) ①사업단에는 사업단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진천사무국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단의 운영 기획 및 평가 지원
2. 사업단의 예산 편성 및 결산
4. 사업단 행정 지원
5. 기타 각 호에 부수된 업무

②사무국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산업협업특화센터(ICC)) ①사업단에는 산학협력교육 및 기술개발과 지역혁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서 정한 특화분야별로 산업협업특화센터(이하 “ICC(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Center)”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ICC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1. 특화 산업분야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성장동력 창출
2. 특화 산업분야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3.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성 제고

③특화분야별 ICC 각각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④ICC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LINC 3.0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 장 위원회

제14조(LINC 3.0 위원회) ①위원회는 교무위원과 외부인사 중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내외의 인사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LINC 3.0 사업 정책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2. LINC 3.0 사업 예산 및 결산
3. 기타 사업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교무위원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이 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의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⑧위원 및 간사는 제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학과협의회) ①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학협력전담교수로 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LINC 3.0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LINC 3.0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실무위원회) ①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LINC 3.0 사업 지원 관련 센터장, 부장, 부단장, 사

무국장, 진천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LINC 3.0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①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외인사로 하고,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자체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협업특화위원회) ①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과 ICC 센터장으로 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협업특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다.

1. ICC 운영에 관한 사항

④협업특화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①LINC 3.0 사업 수행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해 연간 국고지원금 총액의 5%내에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에 대한 계획은 매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LINC 3.0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우석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규정은 폐지한다.

우석학원 정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현행	개정(안)
직제규정	제5조(총장 직속기관)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 <u>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u>,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를 둔다. 제16조(총장 직속기관장) ①<u>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u>,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비서실, 창업지원단, 인권센터의 장은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새만금연구단의 장은 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한다.	제5조(총장 직속기관)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 <u>LINC 3.0 사업단</u>,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 새만금연구단, 인권센터를 둔다. 제16조(총장 직속기관장) ①<u>LINC 3.0 사업단</u>,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비서실, 창업지원단, 인권센터의 장은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새만금연구단의 장은 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한다.
업무분장규정	제5조의4(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u>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u>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2.1., 2017.9.5.) 1. 산학협력 밀착형 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 2. 산·학·연·관 간의 기술, 정보, 인력, 시설 등 기술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활동 3. 기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4(LINC 3.0 사업단) <u>LINC 3.0 사업단</u>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2.1., 2017.9.5.) 1. 산학협력 밀착형 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 2. 산·학·연·관 간의 기술, 정보, 인력, 시설 등 기술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활동 3. 기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규정명	현행	개정(안)																																											
성과급적연봉제 정년트랙전임교원 인사규정	【별표 1】 업적별 평가항목 및 배점표 (개정 2017.9.8) <교육·봉사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업적별 평가항목 및 배점표 (개정 2017.9.8) <교육·봉사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table><tr><th>구분</th><th>항목</th><th>세부항목</th><th>배점 기준</th><th>배점 상한</th><th>점수 산출 방법</th></tr><tr><td rowspan="5">봉사</td><td rowspan="2">입학 활동 6</td><td>고교연계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td><td rowspan="2">회당 2점</td><td rowspan="2">10점</td><td rowspan="2">연간</td></tr><tr><td>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 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td></tr><tr><td rowspan="3">교내 보직 7</td><td>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LINC+육성사업단부단장, 한방병원장</td><td>5점</td><td rowspan="3">10점</td><td rowspan="3">연간</td></tr><tr><td>학과(부)장</td><td>3점</td></tr><tr><td>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기타 보직</td><td>2점</td></tr></table>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준	배점 상한	점수 산출 방법	봉사	입학 활동 6	고교연계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회당 2점	10점	연간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 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교내 보직 7	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LINC+육성사업단부단장 , 한방병원장	5점	10점	연간	학과(부)장	3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기타 보직	2점	<table><tr><th>구분</th><th>항목</th><th>세부항목</th><th>배점 기준</th><th>배점 상한</th><th>점수 산출 방법</th></tr><tr><td rowspan="5">봉사</td><td rowspan="2">입학 활동 6</td><td>고교연계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td><td rowspan="2">회당 2점</td><td rowspan="2">10점</td><td rowspan="2">연간</td></tr><tr><td>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 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td></tr><tr><td rowspan="3">교내 보직 7</td><td>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LINC 3.0 사업부단장, 한방병원장</td><td>5점</td><td rowspan="3">10점</td><td rowspan="3">연간</td></tr><tr><td>학과(부)장</td><td>3점</td></tr><tr><td>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기타 보직</td><td>2점</td></tr></table>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준	배점 상한	점수 산출 방법	봉사	입학 활동 6	고교연계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회당 2점	10점	연간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 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교내 보직 7	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LINC 3.0 사업부단장 , 한방병원장	5점	10점	연간	학과(부)장	3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기타 보직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준	배점 상한	점수 산출 방법																																								
봉사	입학 활동 6	고교연계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회당 2점	10점	연간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 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교내 보직 7	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LINC+육성사업단부단장 , 한방병원장	5점	10점	연간																																								
		학과(부)장	3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기타 보직	2점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준	배점 상한	점수 산출 방법																																								
봉사	입학 활동 6	고교연계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회당 2점	10점	연간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학과체험, 1박2일 캠프,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 박람회, 특강 등)																																											
	교내 보직 7	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LINC 3.0 사업부단장 , 한방병원장	5점	10점	연간																																								
		학과(부)장	3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기타 보직	2점																																										

규정명	현행	개정(안)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별표 1-1】(개정 2012.1.1., 2016.3.7., 2016.3.22., 2019.3.1., 2021.3.4.) 교육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table><tr><th>구분</th><th>항목</th><th>세부항목</th><th>배점기준</th><th>배점상한</th><th>점수산출방법</th></tr><tr><td colspan="5">.....</td></tr></table> 21. 혁신사업단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전공, 교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은 역량개발인증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별표 1-1】(개정 2012.1.1., 2016.3.7., 2016.3.22., 2019.3.1., 2021.3.4.) 교육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table><tr><th>구분</th><th>항목</th><th>세부항목</th><th>배점기준</th><th>배점상한</th><th>점수산출방법</th></tr><tr><td colspan="5">.....</td></tr></table> 21. 혁신사업단 및 LINC 3.0 사업단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전공, 교양, 융합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은 역량개발인증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구분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점수산출방법																			
.....																								
【별표 1-2】(개정 2012.1.1., 2021.4.9.) 교육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한방임상교원) <table><tr><th>영역</th><th>항목</th><th>배점기준</th><th>배점상한</th></tr><tr><td colspan="4">.....</td></tr></table> 7. 혁신사업단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영역	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별표 1-2】(개정 2012.1.1., 2021.4.9.) 교육업적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한방임상교원) <table><tr><th>영역</th><th>항목</th><th>배점기준</th><th>배점상한</th></tr><tr><td colspan="4">.....</td></tr></table> 7. 혁신사업단 및 LINC 3.0 사업단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영역	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영역	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																								
영역	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																								

규정명	현행	개정(안)																																																						
	【별표 3】(개정 2012.1.1., 2016.3.7., 2017.9.8.) 봉사업적 세부평가항목 및 평점 <table><tr><th>영역</th><th>항목</th><th>세부항목</th><th>배점기준</th><th>배점상한</th></tr><tr><td rowspan="7">교내</td><td rowspan="3">교내보직⁶</td><td>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u>LINC+육성사업단부단장</u>, 한방병원장, 자율전공대학장</td><td>15점</td><td rowspan="3">40점</td></tr><tr><td>학과(부)장</td><td>10점</td></tr><tr><td>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⁷, 기타 보직</td><td>5점</td></tr><tr><td rowspan="2">봉사활동⁴</td><td>교육 및 재능기부</td><td>회당 5점</td><td></td></tr><tr><td>자원봉사</td><td>회당 3점</td><td></td></tr><tr><td rowspan="2">기타활동</td><td>대학 출판매체 기고</td><td>회당 3점</td><td rowspan="2">10점</td></tr><tr><td>교내 부서(기관)에서 의뢰하는 특강 교수</td><td>회당 3점</td></tr></table>	영역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교내	교내보직 ⁶	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u>LINC+육성사업단부단장</u> , 한방병원장, 자율전공대학장	15점	40점	학과(부)장	10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⁷ , 기타 보직	5점	봉사활동 ⁴	교육 및 재능기부	회당 5점		자원봉사	회당 3점		기타활동	대학 출판매체 기고	회당 3점	10점	교내 부서(기관)에서 의뢰하는 특강 교수	회당 3점	【별표 3】(개정 2012.1.1., 2016.3.7., 2017.9.8.) 봉사업적 세부평가항목 및 평점 <table><tr><th>영역</th><th>항목</th><th>세부항목</th><th>배점기준</th><th>배점상한</th></tr><tr><td rowspan="7">교내</td><td rowspan="3">교내보직⁶</td><td>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u>LINC 3.0 사업부단장</u>, 한방병원장, 자율전공대학장</td><td>15점</td><td rowspan="3">40점</td></tr><tr><td>학과(부)장</td><td>10점</td></tr><tr><td>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⁷, 기타 보직</td><td>5점</td></tr><tr><td rowspan="2">봉사활동⁴</td><td>교육 및 재능기부</td><td>회당 5점</td><td></td></tr><tr><td>자원봉사</td><td>회당 3점</td><td></td></tr><tr><td rowspan="2">기타활동</td><td>대학 출판매체 기고</td><td>회당 3점</td><td rowspan="2">10점</td></tr><tr><td>교내 부서(기관)에서 의뢰하는 특강 교수</td><td>회당 3점</td></tr></table>	영역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교내	교내보직 ⁶	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u>LINC 3.0 사업부단장</u> , 한방병원장, 자율전공대학장	15점	40점	학과(부)장	10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⁷ , 기타 보직	5점	봉사활동 ⁴	교육 및 재능기부	회당 5점		자원봉사	회당 3점		기타활동	대학 출판매체 기고	회당 3점	10점	교내 부서(기관)에서 의뢰하는 특강 교수	회당 3점
영역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교내	교내보직 ⁶	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u>LINC+육성사업단부단장</u> , 한방병원장, 자율전공대학장	15점	40점																																																				
		학과(부)장	10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⁷ , 기타 보직	5점																																																					
	봉사활동 ⁴	교육 및 재능기부	회당 5점																																																					
		자원봉사	회당 3점																																																					
	기타활동	대학 출판매체 기고	회당 3점	10점																																																				
		교내 부서(기관)에서 의뢰하는 특강 교수	회당 3점																																																					
영역	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배점상한																																																				
교내	교내보직 ⁶	교무위원, 본부 행정실팀장 및 센터장, 대학평의원,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u>LINC 3.0 사업부단장</u> , 한방병원장, 자율전공대학장	15점	40점																																																				
		학과(부)장	10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TFT 위원 ⁷ , 기타 보직	5점																																																					
	봉사활동 ⁴	교육 및 재능기부	회당 5점																																																					
		자원봉사	회당 3점																																																					
	기타활동	대학 출판매체 기고	회당 3점	10점																																																				
		교내 부서(기관)에서 의뢰하는 특강 교수	회당 3점																																																					

규 정 명	현 행	개 정 (안)
교무위원회규정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진천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생취업처장, 사무처장, 교육혁신본부장, 국제교류원장, 산학협력단장, <u>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장</u> , 교양대학장,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진천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생취업처장, 사무처장, 교육혁신본부장, 국제교류원장, 산학협력단장, <u>LINC 3.0 사업단장</u> , 교양대학장,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창업교육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본교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u>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장</u> , 과학기술대학장, 문화사회대학장, 창업교육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지원기관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본교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u>LINC 3.0 사업단장</u> , 과학기술대학장, 문화사회대학장, 창업교육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지원기관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국책사업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책사업이라 함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u>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IINC+)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이라 한다)</u> 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기획처장, 혁신사업단장, <u>LINC+사업단장</u> , 예산조정팀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책사업이라 함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u>LINC 3.0 사업</u> 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기획처장, 혁신사업단장, <u>LINC 3.0 사업단장</u> , 예산조정팀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스마트융합기술 연구소규정	제2조(소속) 연구소는 본교 <u>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하 "LINC+사업단"이라 한다)</u> 산하에 둔다.	제2조(소속) 연구소는 본교 <u>LINC 3.0 사업단</u> 산하에 둔다.

규 정 명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u>LINC+사업단장</u> 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u>LINC 3.0 사업단장</u> 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위원) ①연구위원은 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하며, 전임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 ②전임연구위원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u>LINC+사업단장</u> 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객원연구위원은 스마트융합기술분야의 현장경험과 업적이 현저한 전문가로서 <u>LINC+사업단장</u> 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연구위원) ①연구위원은 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하며, 전임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 ②전임연구위원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u>LINC 3.0 사업단장</u> 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객원연구위원은 스마트융합기술분야의 현장경험과 업적이 현저한 전문가로서 <u>LINC 3.0 사업단장</u> 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연구원) 연구원은 자료 수집 등 연구 활동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u>LINC+사업단장</u> 의 요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한다.	제7조(연구원) 연구원은 자료 수집 등 연구 활동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u>LINC 3.0 사업단장</u> 의 요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 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u>LINC+사업단장</u> 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소장, 연구위원 및 <u>LINC+실무위원회</u>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u>LINC 3.0 사업단장</u> 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소장, 연구위원 및 <u>LINC 3.0 실무위원회</u> 위원으로 구성한다.

규정명	현행	개정(안)
	제9조(개정) 연구소의 재정은 LINC+사업비 와 기타 사업의 수익금으로 자체 충당한다.	제9조(개정) 연구소의 재정은 LINC 3.0 사업비 와 기타 사업의 수익금으로 자체 충당한다.

규정 제정·개정·폐지 사유서			
규정명	· 「생활관규정」		
구분	☐ 제정	☒ 개정	☐ 폐지
주무부서	· 생활관행정팀		
관련부서	· 생활관행정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제정·개정 폐지사유	· 제14조(생활관비) 추가입사자의 관리비 납부 기준에서 ‘사유발생 시기’가 불명확하여 행정의 착오를 초래 · 제16조(관리비 환불) 퇴사자의 관리비 환불기준에서 ‘사유발생 시기’가 불명확하여 행정의 착오를 초래 ·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심의기구이므로 ‘의결’ 삭제 필요 ·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심의기구이므로 ‘의결’ 삭제 필요 - 3호 관생수칙의 제정 및 폐지는 관생회 권한으로 관생수칙 제38조 임무에 따르므로 개정(삭제) 필요 - 4호 예산(안) 심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예산부서 결정 사항으로 개정(삭제) 필요 (생활관규정 제17조 예산·결산 조문 참조) - 5호 시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개정(삭제) 필요 · 제23조(규정개정)은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1호와 중복이 되므로 개정(삭제) 필요		
관련근거	·		
기대효과	· 제14조, 제16조는 사유발생 시기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학생들이 알기 쉬움. · 제18조, 제20조, 제23조(규정개정)는 틀린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주요내용	· 제14조(관리비) 사유발생 시기를 30일 단위로 표기 변경 · 제16조(관리비 환불) 사유발생 시기를 30일 단위로 표기 변경 ·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심의·의결’을 ‘심의’로 변경 · 제20조(위원회기능) - ‘심의·의결’을 ‘심의’로 변경 - 3호 관생수칙의 제정 및 폐지 삭제 - 4호 예산(안) 삭제 - 5호 시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삭제 · 제23조(규정개정)와 제20조 1호(규정의 제정 및 폐지) 삭제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제·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첨부	· 「생활관규정」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생활관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관비) ①관생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9.27., 2018.10.25) ②추가 입사자의 관리비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25) <table border="1"> <tr> <th>사유발생 시기</th><th>입 사 금 액</th></tr> <tr> <td>당해학기 개시일 전</td><td>관리비 전액</td></tr> <tr> <td>총 수업일수의 3분의1 경과 전</td><td>관리비 전액</td></tr> <tr> <td>총 수업일수 3분의1이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 2분의1 경과 전</td><td>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td></tr> <tr> <td>총 수업일수의 2분의1 경과한 후</td><td>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td></tr> </table> ③방학 중 생활관 입사자도 사용기간 동안에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27., 2018.10.25)	사유발생 시기	입 사 금 액	당해학기 개시일 전	관리비 전액	총 수업일수의 3분의1 경과 전	관리비 전액	총 수업일수 3분의1이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 2분의1 경과 전	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경과한 후	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	제14조(생활관비) ① (현행과 같음) ②추가 입사자의 관리비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25) <table border="1"> <tr> <th>사유발생 시기</th><th>입 사 금 액</th></tr> <tr> <td>당해 학기 개시일 전</td><td>관리비 전액</td></tr> <tr> <td>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td><td>관리비 전액</td></tr> <tr> <td>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td><td>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td></tr> <tr> <td>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td><td>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td></tr> </table> ③ (현행과 같음)	사유발생 시기	입 사 금 액	당해 학기 개시일 전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
사유발생 시기	입 사 금 액																				
당해학기 개시일 전	관리비 전액																				
총 수업일수의 3분의1 경과 전	관리비 전액																				
총 수업일수 3분의1이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 2분의1 경과 전	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경과한 후	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																				
사유발생 시기	입 사 금 액																				
당해 학기 개시일 전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																				
제16조(관리비 환불) ①퇴사하는 자의 관리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25) <table border="1"> <tr> <th>사유발생시기</th><th>환 불 금 액</th></tr> <tr> <td>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td><td>관리비 전액</td></tr> <tr> <td>총 수업일수의 3분의1 경과 전</td><td>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td></tr> <tr> <td>총 수업일수 3분의1이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 2분의1 경과 전</td><td>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td></tr> <tr> <td>총 수업일수의 2분의1 경과 후</td><td>반환하지 않음</td></tr> </table> ②방학 중 입사하여 사용한 자가 조기 퇴사하는 경우 환불금은 잔여일에 대하여 일일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정 2007.9.27, 개정 2010.10.7)	사유발생시기	환 불 금 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관리비 전액	총 수업일수의 3분의1 경과 전	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	총 수업일수 3분의1이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 2분의1 경과 전	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6조(관리비 환불) ①(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r> <th>사유발생시기</th><th>환 불 금 액</th></tr> <tr> <td>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td><td>관리비 전액</td></tr> <tr> <td>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td><td>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td></tr> <tr> <td>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td><td>관리비의 3분의1 해당액</td></tr> <tr> <td>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td><td>반환하지 않음</td></tr> </table> ②(현행과 같음)	사유발생시기	환 불 금 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관리비의 3분의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사유발생시기	환 불 금 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관리비 전액																				
총 수업일수의 3분의1 경과 전	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																				
총 수업일수 3분의1이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 2분의1 경과 전	관리비의 2분의1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사유발생시기	환 불 금 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관리비의 3분의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관리비의 3분의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u>심의·의결</u>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25)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25)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u>심의·의결</u>한다. 1.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폐해 2.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생수칙의 제정 및 폐해 4. <u>예산(안) 및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u> 5. <u>시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u> 6. 기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u>심의</u>한다. 1.~2. (현행과 같음) 3. <u><삭제></u> 4. <u>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u> 5. <u><삭제></u>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3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u>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정 변경한다.</u>	제23조(규정개정) <삭제>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6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개정 사유서			
규 정 명	3-1-38-한국어교육지원센터 강사 운영에 관한 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한국어교육지원센터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 간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해당사항 없음		
제정·개정 폐지사유	· 한국어강사 위촉기간(1년 단위)을 교과과정별 운영 기간으로 개정하여 규정과 실제 위촉 기간 간의 상이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급여 및 계속근로의 유권해석 가능성의 문제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기대효과	· 위촉 기간에 대한 명확화		
주요내용	· 강사 위촉을 1년 단위에서 교과과정별 운영 기간으로 변경		
기타사항			
참고사항	·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어교육지원센터 강사 모집 내부 결재 및 결과 보고		
	·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정규과정 및 특별과정 운영 계획 내부 결재		
첨 부	· 개정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규정 전문		

한국어교육지원센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촉기간)	강사 위촉은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위촉기간) 센터 정규과정 및 특별과정 운영안에 따라 위촉한다.